

2002-2012년의 한국 벤처창업정책의 특징 연구*

하규수 (호서대벤처대학원)**

홍길표 (백석대학교)***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벤처창업정책이 어떤 기조로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과제를 제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벤처창업 정책은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벤처기업 육성 가리기 등 벤처산업 건전화 정책이 주요 기조를 이루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벤처캐피탈의 역량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벤처창업정책이 주요 기조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술창업활성화와 청년창업활성화의 정책 기조를 띠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 벤처창업정책은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벤처창업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벤처창업, 벤처창업정책

I. 서론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한 민간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1997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벤처창업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벤처인프라를 확충하던 시기로 1998년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1999년 창업투자조합 출자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 시기는 IT산업의 급성장과 맞물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급증하는 시기였다.

2002년 이후는 벤처기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조정기로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강화되고 벤처캐피탈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코스닥 시장의 퇴출요건이 강화되는 등 벤처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벤처버블이 제거된 후 내실화를 갖추려는 노력이 추진되었다.

2005년부터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및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2008년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창업 지원과 2009년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시장친화적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한국 벤처·창업정책은 하드웨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성장-성숙-회수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내실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다. 벤처붐을 겪으면서 벤처산업은 침체기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창업가 개인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큰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로 인해 정책적으로 무분별한 창업보다는 내실있는 창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이끌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한국 벤처·창업정책이 어떤 정책적 기조로 변화해왔는지 살펴본 후,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하고자 한다. 벤처·창업정책은 정책의 특성과 법적 근거에 따라 벤처정책과 창업정책으로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용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정책에 대해 구분하여 현황을 정리하고 성과와 한계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3년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중소기업정책평가위원회에서 하규수·홍길표·이춘우의 벤처창업정책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 주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ksh@hoseo.edu

*** 참여저자, 백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kphong@bu.ac.kr

****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choonwoo@uos.ac.kr

· 투고일: 2016-12-09 · 수정일: 2016-12-27 · 게재확정일: 2016-12-30

II. 한국의 벤처창업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징 비교

2.1 한국 벤처창업정책의 전개과정의 기본적인 기초 비교

벤처창업정책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및 회수 활성화를 통해 벤처생태계를 번성하게 만들려는 각종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벤처창업정책은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기준으로 창업 초기단계, 벤처투자 성장단계, 벤처투자 회수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¹⁾.

성장단계를 유형 구분의 기준으로 채택한 이유는 벤처기업 및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창업→성장(투자)→회수→재투자(재기)의 선순환 구조(한정화, 2013)가 정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책평가시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정책수단 측면에서 재정·금융부문과 비재정·금융부문으로 구분한다. 통상 비재정·금융부문에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활동이 강조되는 반면, 재정·금융부문에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정부의 간접적 개입과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된다.

<표 1> 벤처기업 성장단계 및 정책수단별 주요 정책

| | 창업 초기단계 | 벤처투자 성장단계 | 벤처투자 회수단계 |
|----------|---|-----------------------------|--|
| 비재정·금융부문 | 벤처확인제도 벤처입지 창업보육사업 인력유입촉진 벤처기업 역량강화 | 기술개발지원 관료지원 | 벤처 재투자 촉진 벤처기업인 재기지 원 |
| 재정·금융부문 | 조세지원 신용보증 창업자금지원 | 엔젤투자 활성화 모태펀드와 VC 활성화 | 코스닥, 코넥스 등 주식 거래시장 활 성화 M&A 등 기업·기술 거래시장 활성화 |

한국 벤처창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특법)에 그 시행근거를 둔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벤처확인제도의 유용성 및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한시적 특별법인 벤특법이 유지되고 이 법에 의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대상기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벤처창업 초기단계는 재정·금융부문 지원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재정·금융부문의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 영역에서는 유망한 창업가를 벤처부문으로 유인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기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벤처기업의 집적지를 만들기 위한 벤처입지정책(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이 시행되었는데, 주로 1998~2000년 기간 동안에 집중된 특징을 지닌다. 이후 국가혁신정책 차원에서 좀 더 광범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정책, 도시 내 오피스텔 등 민간입주시설 확충 등의 입주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실험실공간이나 도시형공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입지지원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창업보육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상당수가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등을 목표로 한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의 창업정책에서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논의를 생략한다.

다음으로 벤처기업을 위한 특별한 인력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수·연구원 벤처창업시 휴직직 허용,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제도나 병역특례 허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군복무기간 창업 지원이나 해외인력 유입을 위한 창업비자 도입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벤처기업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육훈련,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벤특법에 근거한 특정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 중소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다양한 교육훈련, 컨설팅 프로그램이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벤처창업 초기단계에 주로 강조되는 대표적인 재정·금융부문 지원정책으로 다양한 세제지원정책이 부각된다. 예를 들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벤처확인일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면제, 벤처확인일 5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적용한다.

세제혜택 이외에도 확인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방송광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재정·금융 지원정책으로 신용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우대방안을 들 수 있다. 신용보증 분야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한도 확대, 보증요율 감면,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측면에서는 정책자금 한도를 우대하는 지원을 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금융 지원의 한 방편으로 직접적인 창업자 금지원을 행하는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앞서 논의한 창업정책에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수 창업자금지원사업이 벤처기업 등을 목표로 한 기술창업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광의의 벤처정책에 포함된다.

벤처창업 초기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재정·금융부문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면, 벤처투자 성장단계 및 벤처투자 회수단계에서는 재정·금융부문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이 단계의 재정·금융부문 지원정책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1) 벤처정책을 확인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혜택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창업→성장(투자)→회수→재투자(재기)라는 순환사이클을 포괄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벤처기업 지원 혜택을 포함하되, 벤처기업 및 벤처생태계 발전과 관련된 연관정책을 추가로 포함해 논의하고자 한다.

및 기업환경 개선 정책이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벤처투자 성장단계에서는 모태펀드와 VC 활성화, 엔젤투자 활성화방안 등이 포함되며, 벤처투자 회수단계에서는 코스닥이나 코넥스 등 주식 거래시장 활성화와 M&A 등 기업·기술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 분야 벤처정책의 특징은 모태펀드를 제외하고 그 대부분이 직접적인 정부지원보다는 금융시장 및 민간부문이 벤처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확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에 중점을 둔다.

VC 및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IPO를 통한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리보드 제도 개선 및 코넥스 신설, M&A 제도 개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금융시장 및 민간부문이 벤처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확대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지만, 한국 금융산업의 특성상 관치금융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태펀드 출자 등 정책금융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목표는 금융시장 및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규모 확대이지만, 현실은 정부 의존적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모 확대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한편 벤처투자 성장단계 및 벤처투자 회수단계의 非재정·금융부문 지원정책으로는 기술개발 지원, 판로 지원, 벤처 채투자 촉진, 실패 벤처기업인 재기지원 등의 방안들이 포함된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 및 판로 지원방안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다양화한 반면, 벤처 채투자 촉진 및 실패 벤처기업인 재기지원 방안은 최근에 들어와 강조되는 특성을 보인다.

2.2 정부시기별 벤처창업정책의 특징

2.2.1 노무현 정부의 벤처창업정책의 내용과 특징

‘02년부터 ‘04년까지 벤처버블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건전화방안이 다른 지원정책보다 강조되었다. 2002년 2월 ‘벤처기업의 건전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기진단시스템을 도입하고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개편, 벤처캐피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의 휴폐업 여부, 벤처확인 기준 충족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2002년 8월에는 벤처특별법을 개정함에 따라 혁신능력 포함 등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개편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과 합병절차 간소화 등 벤처기업 M&A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벤처기업 제도약 방안’이 발표되면서 벤처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자금과 민간자금을 합쳐 5천여억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하도록 하였다(한정화, 2013).

2003년 6월에는 벤처기업 M&A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식교환 현물출자 특례를 인정함과 동시에 소규모 M&A의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등 법적 요건을 완화하였다.

일련의 벤처 건전화정책이 시행되고 ‘03년부터 시작된 카드 대란 위기를 극복한 정부는 ‘05년부터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경제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04년 12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탈이라는 경제주체 관점을 넘어서 벤처생태계 관점에서 새로운 체제를 안착시키기 노력을 기울인다. ‘05년부터 시작된 벤처재조정기는 ‘07년 2기 벤특법 연장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2005년 이후부터는 벤처정책이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벤처생태계 관점에서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정부의 지원은 시장실패 영역인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2006년 6월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자산수탁제도의 도입, 민간 Fund of funds 기능을 마련하였으며 후속조치로 2007년 4월 창투자 및 창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개선, 유한책임 조합원수 감소, 투자조합 중간배분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 II’를 발표하였다(한정화, 2013).

2.2.2 이명박 정부의 벤처창업정책의 내용과 특징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를 제도약 준비기로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가 주도했던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에 초점을 둔 정책보다는 기술창업이나 청년창업에 초점을 둔 정책에 우선적인 주안점이 두어졌다. ‘07년 4월 신기술 창업 활성화, ‘07년 11월 유학생 복귀 창업지원, ‘07년 12월 창업보육사업 활성화, ‘08년 4월 창업절차 간소화와 창업지원센터 설치, ‘08년 6월 기술창업 활성화대책, ‘09년 1월 창업자금 확대 및 창업투자 보조금제도 도입, ‘09년 3월 1인창조기업 활성화전략, ‘10년 3월 1인창조기업 육성방안, ‘10년 8월 청년 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 ‘11년 4월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11년 9월 청년창업 활성화방안, ‘12년 5월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 등 기술창업과 청년창업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다만 이들 활성화된 기술창업이나 청년창업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벤처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한편 직접적으로 벤처와 관련된 정책변화로는 ‘09년 1월의 벤특법 개정을 우선 들 수 있다. 이 개편에는 예비창업기간 중 휴직을 허용하고 창업전문회사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에는 벤처펀드의 출자규제를 완화시키고 벤처기업 CEO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2011년에는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보육 확대(인큐베이팅 펀드)하고 2012년과 최근까지 벤처기업인의 재도전을 촉진하고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 시키기에 따라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2002~2012 벤처창업정책의 내용과 기초의 변화

| 구분 | 벤처 침체기 (노무현 정부 1기) | 벤처 재조정기 (노무현 정부 2기) | 벤처 제도약 준비기 (이명박 정부) |
|------------------|---|--|---|
| 시기 | 2002-2004 | 2005-2006 | 2007-2012 |
| 정책 기초 | 육식 가리기를 통한 벤처산업건전화 | 벤처캐피탈의 역량과 투명성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인 창업기업 지원 등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
| 신설된 주요 벤처창업정책 | 벤처기업 건전화방안(02.2) 육식구분 위한 벤처기업실태조사(02.3) 벤처기업 제도약방안(02.11) 코스닥시장 신뢰회복방안(02.12) 벤처기업 M&A활성화방안(03.6) 벤처기업 활성화대책(04.12) | 벤처캐피탈 역량제고(05.3) 벤처캐피탈 투명성제고(05.9)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05.11)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06.6/07.4) | 벤처특별법 연장(07.8) 신기술창업 및 창업보육사업(07) 기술창업활성화 대책(08.6)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09.11) 정책펀드 효율화방안(11.9)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12.5) |

III 한국 벤처창업정책의 특징 종합

3.1. 벤처투자 중심으로의 전환과 미래 창조 펀드 조성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에 총 7차례의 벤처창업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제2의 창업 붐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여왔다(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 2013; 한정화, 2013).

벤처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차입중심의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조달부족을 세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엔젤투자의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 중심으로 자금 지원을 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벤처기업의 자금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온라인을 통하여 크라우드 펀딩 (Crowdwing Funding) 제도를 신설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 초기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도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안이다(이규목, 2011).

또한 엔젤투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비율 및 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벤처기업 특별법 제2조의 2항을 개정하여 투자대상도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까지로 엔젤투자대상을 확대한 것은 정부에서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을 위하여 진지한 접근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민간 3,500억원, 정책금융 1,000억원, 모태펀드 500억원 등 5천억원 규모의 미래창조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방안이다. 특히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창업초기 투가 기업에 투자한 이후에 이익과 손실 배분에서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은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서 이는 투자시장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완하려는 정책으로 이는 투자한 초기 창업기업이 성공하면 민간투자가 이익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실패하면 정책자금의 손실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초기 창업기업들의 투자성공사례가 많아진다면 초기 벤처기업에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3.2. 기술 혁신형 M&A 활성화 정책

기술혁신형 M&A로 인정되는 경우에 세제상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등의 제도도 도입을 하였다.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피인수 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는 등의 M&A관련 규정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간이합병의 경우에 의결권 요건을 완화하였고 소규모 간이합병의 경우에 이사회회의 의결로 주주총회 승인을 대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M&A시장에 민간부분 1.4조원과 정책기관 6천억원 등 2조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펀드를 마련하여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융자와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융자와 투자의 중간형태인 메자닌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 2013; 한정화, 2013).

그 밖에도 M&A와 기술평가 관련 거래 정보망을 확충하는 방안과 M&A 거래 촉진을 위하여 전문컨설팅과 자금연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3. 코스닥 시장의 육성과 코넥스 시장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위원회의 위원들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요건과 보호예수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 2013).

또한 코넥스시장을 신설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응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고 자금조달과 투자회수를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주기로 하였다.

3.4 재기 지원 제도의 도입 검토

제도전 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기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대보증페지를 1금융권은 물론이거니와 제2금융권에도 페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전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법원과 협력하여 재기컨설팅을 실시하

고 회생절차와 비용을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재기지원을 돕는 조치가 포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 2013).

IV. 한국 벤처창업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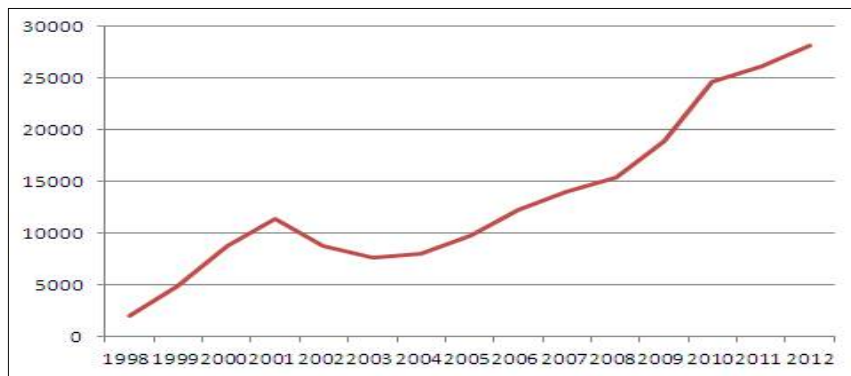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그 정책성고가 당해 연도부터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책시행과 성과창출 간에는 정책시차(Time Lag)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 측면에서 ‘2002년-2012년’의 벤처정책의 성과는 2013년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 있다.

4.1. 종합적 평가

4.1.1.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와 기업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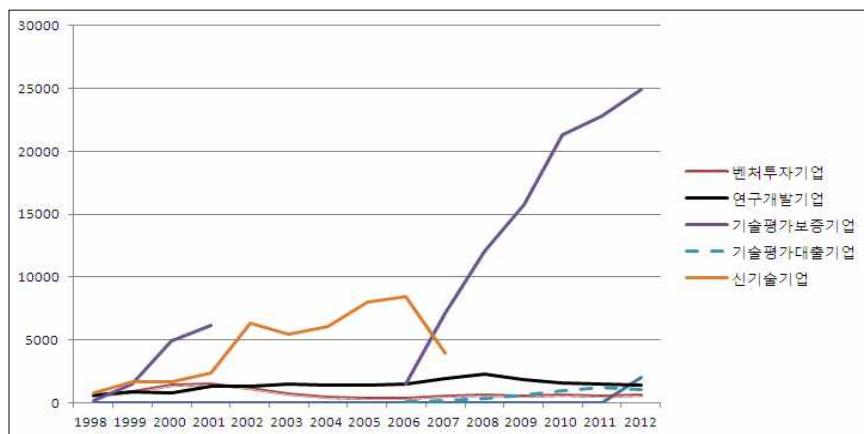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을 통해 보듯 2003-2004년을 기점으로 벤처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년 9월 1일 현재 29,336개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벤처확인기업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벤처업계는 물론 벤처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반가워할 일이지만, 실상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즉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본연의 벤처기업의 성향을 지닌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확인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인증)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venturein>) 자료를 재구성
 <그림 1> 벤처확인기업 수의 변화 추세

특히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2013년 9월 1일 기준 29,336개의 벤처확인기업 중 기술평가보증 유형이 25,721개로 전체의 87.8%를 차지함으로써,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식되는 정체성 혼란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벤처확인

기업과 이노비즈인증기업과의 중복성 논란도 존재하고 있다. 향후 벤처기업의 정체성 및 이노비즈와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venturein>) 자료를 재구성
 <그림 2>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변화 추세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벤처기업의 정체성 문제 및 이노비즈와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벤처정책이 이노비즈와 같은 다른 기술창업정책과 함께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

업가형 창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 이면에 감추어진 기업 구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우선 벤처기업의 업종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1일 기준 제조업이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처리/SW도 15.9%를 차지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제조업과 정보처리/SW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벤처정책이 기업가형 창업을 유인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2002년 기준(2003년 실태조사 결과) 제조업 비중이 64.7%에서 2013년 9월 1일 기준 72.1%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진 점은 ICT 활용을 중시하는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향후 벤처기업이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ICT 활용 업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유인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분포 측면에서 2013년 9월 1일 기준 서울이 21.8%, 경기/인천이 35.3%를 차지해 57%가 넘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9월 1일 기준 수도권 비율이 57%를 넘고 있지만, 2003년도 기준 서울 42.3%, 경기/인천 29.8%로 70%가 넘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난 10년간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분포는 2012년도 기준(2013년 벤처천역기업 조사결과) 벤처천역기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수도권비율이 56.5%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균형발전과 클러스터 등 지역혁신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국가정책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2013년 9월 1일 기준 벤처확인기업의 업력 분포 측면에서 5년 이상이 57.6%, 특히 10년 이상이 30.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평가보증 유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벤처확인기업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포함한 현행 벤처정책이 기술혁신형 창업을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역할이 다소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표 3> 벤처확인기업의 업력 분포(2013년 9월 1일 기준)

| | 6개월미만 | 6개월~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10년미만 | 10~20년미만 | 20년이상 | 예비벤처 | 합 계 |
|-------|-------|----------|--------|--------|---------|----------|-------|------|--------|
| 업체수 | 228 | 787 | 6,035 | 5,331 | 7,817 | 7,583 | 1,498 | 57 | 29,336 |
| 비율(%) | 0.9 | 2.7 | 20.6 | 18.2 | 26.7 | 25.8 | 5.1 | 0.2 | 100 |

자료: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venturein>) 자료를 재구성

4.1.2 벤처기업 차원의 성과

2011년 기준(2012년 실태조사 결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과 비교해서도 매출액 증가율이라는 성장성 측면에서는 다소 우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벤처기업 경영성과(2011년 기준, 2012년 실태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 대기업 | | 중소기업 | | 벤처기업 | |
|----------|------|------|------|------|------|------|
| | 전체 | 제조업 | 전체 | 제조업 | 전체 | 제조업 |
| 매출액 증가율 | 13.1 | 14.3 | 10.6 | 11.7 | 13.9 | 14.4 |
| 매출액 영업이익 | 5.3 | 6.1 | 3.1 | 4.2 | 4.7 | 4.8 |
| 매출액 순이익률 | 3.3 | 4.7 | 1.6 | 2.2 | 2.7 | 2.6 |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출처 - 2011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2012, 벤처기업 - 2012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주: 벤처기업 해당연도 창업기업 제외

다만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비 성과우위 변화추이는 십년전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 2002년 기준(2003년 실태조사 결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면 성장성은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 일반 중소기업 대비 절대 우위, 대기업 대비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표 5> 벤처기업 경영성과(2003년 실태조사 결과)

| 구분 |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제조) |
|-------------------|-------|-----------|----------|----------|
| 매출증가율(%) | 2001년 | 0.8 | 3.4 | 21.7 |
| | 2002년 | 7.2 | 10.2 | 18.7 |
| 매출액대비경상(영업)이익률(%) | 2001년 | △0.6(6.0) | 2.2(4.5) | 5.1(4.7) |
| | 2002년 | 7.5 | 5.4 | 5.3* |

자료: 한국은행, 2001년, 2002년 기업경영성과분석결과(제조기준)
주 *: 2002년 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임.

10년전에 비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비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우위추세가 줄어든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는 경제구조 측면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구조가 더욱 심화된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에서도 부분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일반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백훈(2012)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 67만명 중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고용이 27.3명으로 일반중소기업(3.8명)에 비해 7.2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 추이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은 1998년 76천명에서 2006년 356천명으로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21.4%로 대기업의 12배, 일반 중소기업의 5배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벤처기

업은 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의 정책목표를 삼고 있는 현정부의 입장에서 벤처기업 활성화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발견되는 대목이다.

또한 한국에서 벤처기업은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경제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벤처확인기업 출신의 벤처천역기업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의 표를 통해 보듯 벤처기업 출신의 벤처천역기업의 신규 진입추세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6> 벤처천역기업의 연도별 추세

(단위: 개사, %)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기업수 | 68 | 78 | 102 | 152 | 202 | 242 | 315 | 381 |
| 증가수 | - | 10 | 24 | 50 | 50 | 40 | 73 | 66 |
| (비율) | | (14.7) | (30.8) | (49.0) | (32.9) | (19.8) | (30.1) | (21.0) |
| 신규 진입수 | - | 24 | 34 | 59 | 68 | 73 | 85 | 87 |

자료: 벤처천역기업 조사결과(중기청)
주: 각 년도는 천역기업 확인(선정) 연도임

벤처기업이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경제구조 속에서 그나

마 좁은 통로의 성장사다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벤처기업 활성화정책을 2013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4.1.3. 벤처생태계 차원의 성과

벤처정책은 벤처기업만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벤처기업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보다 확장되고, 구성요인의 부분적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혁신네트워크 및 창업보육, 창업/기업가정신의 교육, 산학연 연구 및 기술교류 등은 10년전에 비해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핵심적 생태계 구성요인(벤처기업 투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등)은 벤처붐이 불던 10년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우선 벤처생태계 측면에서 벤처기업 투자를 담당하는 VC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벤처투자업체 수 측면에서는 답보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비해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08년 이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벤처붐이 일던 2000년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평가년도인 2002년에 비해서는 2012년 약 2배 정도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7> 연도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투자업체수 | 1,910 | 1,119 | 768 | 630 | 544 | 635 | 617 | 615 | 496 | 524 | 560 | 613 | 688 |
| 투자금액 | 20,211 | 8,913 | 6,177 | 6,306 | 6,044 | 7,573 | 7,333 | 9,917 | 7,247 | 8,671 | 10,910 | 12,608 | 12,333 |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3

문제는 벤처투자규모 확대를 주도해 온 것이 민간부문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라는 점에 있다. 2005년 모태펀드 설립 등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공공부문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2012년 벤처펀드 출자자 비중(%)을 본다면, 정부기금 32.8%(모태펀드 28%), 연금기금 11.7%, 금융기관 20.7%(정부기금 5.6%), 일반 법인 16.1%로, 공공부문 의존도가 44.5% 수준에 이르고 있다(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5.15). 사실상 공공부문이 주도해 벤처투자규모를 정책적으로 확대해 온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창투사의 납입 자본금이 2013년 5월 현재 1조 4,633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잔액은 오히려 증가 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한국벤처캐피탈 협회 창업투자 현황, 2013.5)를 보더라도 투자규모가 늘어난 실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소극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들어와 VC들의 기업당 투자규모

는 과거에 비해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VC들의 선별 및 투자역량이 커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창업단계별 벤처투자 비중 측면에서 창업 3년 이하 30%, 창업 3-7년 25.4%, 그리고 7년 초과 44.6% 등(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3; 창업투자 현황, 2013.5)으로 모험적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한계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벤처투자의 축인 엔젤투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효과는 매우 낮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엔젤투자 부문의 위축은 결과적으로 VC투자 이전단계에서 행해지는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많은 창업벤처기업들이 금융권 용자에 의존하게 되어 실패에 따른 위험이 창업기업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민간주도 VC 투자규모 확대 한계나 엔젤투자 위

축의 근본적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닥을 통한 IPO의 위축이나 M&A 등 회수시장의 비활성화를 꼽고 있다. 특히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IPO를 통한 자금회수가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스닥 벤처기업의 수는 2005년 405개로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된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벤처확인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코스닥에 등록되는 벤처기업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표 8> 벤처기업 수와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 수 추이

|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벤처기업수 (A) | 11,392 | 8,778 | 7,702 | 7,967 | 9,732 | 12,218 | 14,015 | 15,401 | 18,893 | 24,645 |
| 코스닥벤처기업수(B) | 353 | 376 | 381 | 369 | 405 | 390 | 335 | 268 | 285 | 295 |
| B/A | 3.1 | 4.3 | 4.9 | 4.6 | 4.2 | 3.2 | 2.4 | 1.7 | 1.5 | 1.2 |

주: 벤처기업 수 및 코스닥 벤처기업 수는 각 연도 말 기준임
 자료: 벤처통계시스템, 코스닥 벤처지수

한편 중간회수 메카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거래나 M&A 역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10년간 기술거래나 M&A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벤처투자 중간회수 메카니즘 작동력을 강화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벤처정책 노력에 비해 가장 효과성이 떨어진 분야가 바로 금융시장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투자 및 회수 메카니즘 분야라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우리나라 벤처창업정책은 2002년 8,700여개의 벤처확인기업 수를 2013년 9월 1일 현재 29,333개로 확대한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기업가형 벤처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전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의 고용창출력은 타 부문에 비해 높아 창조경제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업부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2012년 기준 벤처천역기업을 416개 선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모델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수 및 기업성과 측면의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벤처생태계의 활성화 수준은 벤처붐이 일던 2000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벤처지원 및 창업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벤처생태계를 보조하는 지원기관들, 예를 들어 창업보육센터나 보육인력, 창업기업 컨설팅 기관 및 지원인력, 창업교육프로그램, 산학연 협력 및 기술교류 등은 확대되고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정작 벤처생태계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벤처투자를 담당하는 VC와 엔젤, 중간회수시장으로서의 코스닥이나 M&A 등은 벤처붐이 일던 200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히려 위축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2013.5.15),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2011), *혁신주도형 국가의 주요 창업활동 지수*
 김근영·이갑수(2004),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1-16.
 김대호·황기태·김홍(2009),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벤처창업학회 2009년 통합학술대회, 105-120.
 백훈(2012), *역대 벤처기업 육성정책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기분연구* 12-18.
 벤처확인-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venturein.or.kr/>.
 손병호(2007), *선진 벤처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경기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30.
 송중호(2012), *중소벤처기업 규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양현봉(2013), *창업지원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산업연구원*
 오용석(2008), *중소기업의 청산절차 간소화 연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규목(2011), *혁신형 기업 투자를 위한 민간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20(4), 3-7.
 중소기업청(2012), *201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벤처기업협회(2013), *2012년 벤처천역기업 조사결과*.
 중소기업청·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2), *연도별 벤처투자 현황* 통계자료
 창업진흥원(2012), *창업선도대학 종합지원 프로그램* 내부자료
 창업진흥원(2012),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통계자료
 창업진흥원(2012), *청소년 비즈쿨 연도별 운영 프로그램 추이* 통계자료
 창업진흥원(2012) *연도별 BI 운영 현황* 통계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2), *엔젤투자 규모 변화추이* 통계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2), *창업투자 현황* 통계자료
 한국은행(2011), *2011년 기업경영분석*
 한정화(2002), *한국벤처생태계의 진화과정과 미래전망*, 한국의 벤처생태계 진단, *삼성경제연구소*
 한정화(2008), *제2기 정책방향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 제2기 벤처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한정화(2013),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중소기업청장 강연자료.
 홍길표(2012), *벤처확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벤처기업협회 연구용역보고서.
 Baek H.(2012), *A comparative study on development policies of the Korean venture enterprise*, *Basic Research of Small Business Institute* 12-18.
 General Report of Government supporting startup(2013.5.15.),

- Virtuous circle policies of investment system for Koreana Venture Startups.* <http://www.venturein.or.kr/>.
- Han, J. W.(2008), the second period policy direction and venture business start-up and growth promotion, the second venture policy direction policy discussion data, *the small business research institute*.
- Han, J. W.(2013), direction of SME policy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 Hong G. P.(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enture Identification System,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Research Service Report*.
- Kim, G.Y.. Lee, K. S.(2004), Policy Suggestions for Activating Technology Entrepreneurship,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16.
- Kim D. H., Hwang K. T., Kim H.(2009), Policy Suggestions for Activating Technology Entrepreneurship,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Association*, 106-120.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12), *General Supporting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y of Incubation for Startups*.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12), *Annual Performance of Startups Academy*.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12), *Annual Trend of Bizcool for Youth Program*.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12), *Annual Report of Business Incubation*.
- KVCA(2012), *Trend of the Scale of Angel Capital in Korea*.
- KVCA(2012), *Situation of investment on Startups*.
- Korea Bank(2011), *The Analysis of Korean Business firm*, 2011.
- Lee, G.(2011), How to Activate Private Venture Capital for Innovative Corporate Investment, *Weekly Financial Brief 20* (4), 3-7.
- Oh, Y. S.(2008), A Study on Simplification of Clearing Procedur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all and Medium Business Promotion Corporati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KOVA (2012), *2012 Actual Situation Survey on Korean Business Ventures*.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KOVA(2013), *2012 Survey on Korean Business Ventures of 100,000 million won*.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KVCA (2012), *Annual Report of the Investment of Korean Venture Capita*.
- Son, B. H.(2007), How to Activate Private Citizens to Create Advanced Venture Ecology,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Planning and Evaluation Service*, 3-30.
- Song J. H.(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Business Regulation*,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1), *Key Index of Startups of Countries initiating innovation*.
- Yang .H. B (2013), Actual Conditions and Tasks of Business Support Policy,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A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Government Policies for Venture Business During 2002-2012*

Kyu-Soo, Ha**
Kil-Pyo, Hong***
Choonwoo Lee****

Abstrac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how the venture-startup policies of South Korea has changed for the last ten years and then scope on its outcomes, limits and suggestions. Several policies for venture-startup has begun when “Small Business Startup Support Law” was developed in 1986.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for venture and startup and development of venture had made a turning point in 1997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and venture companies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with Information Technologies(IT). However, with the global IT bubble and the enrichment of venture companies, a number of venture companies experienced considerable difficulties due to multiple thresholds. There were a lot of efforts to revitalize venture-startup ecosystem such as fostering innovative SMEs and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 support policy. From 2002 to 2004,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preventing moral hazards of Korean Venture Business. From 2005 to 2006, It focused on fostering the role of venture capitals , and From 2007 to 2012, Single start-up business has been fostered by government policies. Generally speaking, it can be said that venture-startup policy was emphasized on building the hardware infrastructure of venture-startup and supporting with the funds.

Keywords: Venture-Startup, Venture-Startup Polici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6 Research Fund of the University of Seoul. This work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earch reports by Ha, Kyu-Soo, Hong, Kil-Pyo and Lee, Choonwoo in Small Business Policy Committee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Venture Business, Hoseo university(ksh@hoseo.edu)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Back Suk University(kphong@bu.ac.k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Corresponding author / choonwoo@uos.ac.kr)